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2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 경영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의 수만 삭제하고, 시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도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비상임이사 자격요건'을 수정함(안 제9조제1항).
- 나. 알법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9조제4항).
- 다. 현행 제26조를 유지하도록 함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안 제9조제4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p>
<p>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,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상임이사를 ----- ----- -----.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		<p>④ ----- 정관에 따라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6조(보고 및 검사) <u>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	<p>제26조(보고 및 검사) <u>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상임 이사를”을 “상임이사를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제25조의 제목“(감독)”을“(감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업무를 감독한다”를 “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”로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사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
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</u>와 <u>비상임이사</u>로 구분하되, 비</p>	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</u>와 <u>비상임이사</u>로 구분하되, 비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,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 <u>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</u></p>	<p><u>상임이사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장이 지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상임이사를</u> ----- ----- 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정관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u></p>	
<p><u>④ 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⑦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⑧ (생략)</u> <u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</u></p>	<p><u>③ (현행 제8항과 같음)</u> <u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이월결손금의 보전</u> 2. <u>이익준비금의 적립</u> 3. <u>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</u> 4. <u>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</u> <p><u>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</u> 2. <u>이익준비금으로 보전</u> 3. <u>결손금으로 차기이월</u> <p><u>제25조(감독)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31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② <u>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</u></p>	<p><u>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u></p> <p>제25조(<u>감독 등</u>) ① ----- <u>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u></p>	